

프린트

닫기

##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-최윤범 회장 연결고리 재조명

입력 2026-03-16 17:09 | 수정 2026-03-16 17:09

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관계는 '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' 1심 판결문에도 나타나 있다.

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작년 10월 지 대표가 '코리아그로스제1호'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유죄 판결(집행유예)을 내렸다. 재판부는 "피해 펀드(코리아그로스제1호)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지창배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전문투자자들"이라고 판시했다. 코리아그로스제1호는 고려아연이 펀드 자금 대부분을 출자해 지분율이 94.64%에 달하는 펀드다.

원아시아는 SM 주식 매입엔 '하바나제1호'를 활용했다. 검찰은 지 대표가 카카오 경영진과 공모해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였다고 보고 지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. 당시 검찰 수사에 따르면 고려아연 재무담당자들은 2023년 2월13일 원아시아가 운용하던 펀드 '하바나제1호' 캐피탈콜(출자이행 요구)를 받고 이틀 뒤 곧바로 1000억원을 펀드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. 출자자(LP)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기 위해 10~14일의 캐피탈콜 기한을 두는 PEF업계 관행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속도다. 지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.

송은경 기자 [norae@hankyung.com](mailto:norae@hankyung.com)

© 마켓인사이트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프린트

닫기